

윤 리 규 정

2022.09.01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제·개정 이력표

연 번	일 자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비고
1	2022.09.01	신규 제정	이준구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윤리규정의 관리조직) 제5조 (기본 원칙)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6조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7조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제8조 (경쟁사·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3장 고객, 주주,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9조 (고객에 대한 책임) 제10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1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4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제12조 (공사(公私)의 구분) 제13조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제14조 (정치적 참여 및 활동)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5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제16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 제17조 (환경보호) 제18조 (안전, 건강 중시) 제19조 (기본원칙)
제6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20조 (신고의무) 제21조 (제보자 보호) 제22조 (윤리규정 위반 시 조치)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란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본인의 가족, 친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③ '이해관계자'란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 고객, 주주, 투자자, 소비자, 구성원, 협력회사, 국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4 조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

- ① 회사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은 Compliance 팀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Compliance 팀의 유권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 5 조 (기본 원칙)

- ①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③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지연, 학연,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6 조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 ①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 ③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내·외부,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 ① 회사의 모든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절차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의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영업권 등)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③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제 8 조 (경쟁사·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①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 ② 협력회사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③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거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한다.
- ④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⑤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 3 장 고객, 주주,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9 조 (고객에 대한 책임)

- ①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② 고객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10 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 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 제안을 존중한다.
- ②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③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④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11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 ① 임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 인격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
-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③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제 4 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제 12 조 (공사(公私)의 구분)

- ①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 거래를 하지 않는다.
- ③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 (납품, 용역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타 이해관계자의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 조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 ① 임직원은 업무태만, 근태불량, 월권행위 등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해 나간다.
- ③ 사내/외에서 성희롱, 차별대우, 폭언, 폭행 등의 임직원 간의 부당행위,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정치적 참여 및 활동)

- ①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또는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기부금(금전 또는 물품)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 15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① 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 국제협약, 회계기준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 ②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 16 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

- ①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②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준수한다.
- ③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방지 정책, 무역 제재 정책, 부패 방지 규정 준수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매년 교육을 실행한다.

제 17 조 (환경보호)

-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 ②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 18 조 (안전, 건강 중시)

- ①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 ②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 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제 6 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 19 조 (기본원칙)

- 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 20 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보자 보호)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 (윤리규정 위반 시 조치)

- ①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윤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
- ③ 모든 임원 등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